

<b>브리핑</b>	2022년 3월 10일(목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	[의결 안건] 가. 통신시장조사과	전혜선 과장(2110-1530)
	[보고 안건] 가. 인터넷이용자정책과	최윤정 과장(2110-1520)

## 2022년 제12차 위원회 결과(서면회의)

□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,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.

### [의결안건]

가.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에 따른 고시·훈령 제·개정안에 관한 건  
(별도 보도자료 참고)

- 「전기통신사업법」(21.9.14. 시행)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[별표4], 제46조제1항 [별표6] 등의 개정에 따라 「앱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」 제정안, 「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」 및 「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」 개정안을 심의·의결함
- 이번에 의결된 고시 등 제·개정안은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과 함께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.

### [보고안건]

가.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을 위한 관련 고시 제·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(’22.4.20. 시행, 이하 ‘위치정보법’)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고시 제·개정(안)을 보고함.(개정 4건, 제정 3건)

개정 고시	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②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③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④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
제정 고시	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⑥ 위치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⑦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

- 위치정보법(제5조) 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·변경등록 신청, 양수·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자구수정 및 서식 개정(①~③)
-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·변경등록, 양수 및 법인의 합병 시 심사 기준 현행화, 평가방식 마련
-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조치 및 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법(제5조)이 개정되어 「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(방송통신위원회 고시 2015-15)」의 목적에 위치정보법 위반자를 추가(④)
-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"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"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 제정(⑤)
-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준수해야 할 관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(⑥)
-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(⑦)
- 향후 고시 제·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2022년 4월 20일 시행될 예정임. 끝.